

## <주의요망>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

### 1. 실손보험료 차감방법 요약정리

2023년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3년 이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자 스스로 2024년 5월에 해당 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바라고 이 경우 가산세는 없음.

### 2. 2022년과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2023년에 수령하는 경우

#### (1) 차감방법

2023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2년 실손의료보험금은 2022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, 2023년 실손의료보험금은 2023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

#### (2) 사례

- ① 2022년 귀속 총급여액 4,000만원, 의료비 지출액 300만원

☞ 2022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액=(300만원 - 4,000만원×3%)×15%=270,000원

- ② 2023년 귀속 총급여액 4,000만원, 의료비 지출액 250만원,

실손보험금 수령금액 260만원. 이 중 2022년 귀속분은 160만원이고,  
2023년 귀속분은 100만원인 경우  
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액은?

귀속연도	2022년 귀속	2023년 귀속
① 의료비 지출액	300만원	250만원
② 실손보험금 차감액	160만원	100만원
③ 공제대상 의료비(①-②)	140만원	150만원

☞ 2022년 수정 의료비 세액공제액=(140만원 - 4,000만원×3%)×15%=30,000원

2023년 의료비 세액공제액=(150만원 - 4,000만원×3%)×15%=45,000원

- ③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수정신고

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사례의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액 240,000원(=270,000원-30,000원)을 수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함.

단, 2022년 귀속분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.

☞ 관련법령 : 국기법 제48조 제1항 3호,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

- ① 국기법 제48조 제1항 제3호

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국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

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(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)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(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(3) 국세청 자료의 활용

-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국세청 자료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며 계약자와 수익자도 확인이 가능함

<b>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</b>				
<b>(실손의료보험금)</b>				
(조회기간 : 2023년 01~12)				
■ 피보험자 인적사항				
성명		주민등록번호		
최진화		420904-xxxxxxx		
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				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수익자		
좋은화재보험(주)	무배당굿보험	420904-xxxxxxx	최진화	200,000
102-81-32033	L01102xxxxx	420904-xxxxxxx	최진화	
인별합계금액				200,000

- ② 다만,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실손의료보험금이 2022년 귀속분 것인지, 2023년 귀속분 것인지의 구분이 되어 자료가 출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  - ☞ 따라서 만약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액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큰 경우라면 2023년 이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.
  - ☞ 이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귀속 연도가 구분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지급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의 귀속연도를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
- ③ 참고로 국세청에 제공되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내역의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
  - ☞ 실제 치료받은 일자가 아닌 보험금 지급일자로 적용됨
  - ☞ 보험금을 지급받은 주체와 관계없이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 기준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됨
- ④ 의료비 세액공제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자료가 조회되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면 됨